

‘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8년 6월 9일
- 회부일자 : 1998년 6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148회 임시회

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('98. 6. 17) 상정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황 옥)

가. 제안이유

- '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제147회('98. 5. 2) 임시회에서 변경 확정 한 바 있으나
- 도유재산(도로)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[재산의 처분]

- 단양 온달국민관광지편입 도로부지(지방도) 양여 -
- 위 치 : 단양군 영춘면 하리 141-1외 9필지
- 규 모 : 6,985㎡ (2,113평)
- 시 기 : '98상반기
- 처분가액 : 11,725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충청북도 '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(안)을 검토한 바,

이는 지방도 제519호선내 남천교 개수공사로 폐도 부지(10필지 6,985㎡, 공시지가로 11,725천원)가 단양군에서 조성중인 온달국민관광지에 편입됨에 따라 폐도부지를 단양군에 양여하는 조건으로 신규 설치된 접속도로 부지 (9필지 5,440㎡, 보상비 82,584천원)를 단양군에서 부담 매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는바,

폐도부지를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 폐지하여 단양군에 양도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5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첨부서류

- '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(안)